

# 산업재산권의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 방안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제공  
(소장 정 병호)

## 목 차

- 특허기술개발단계에서의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 특허의 기업화 단계에서의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 특허 등 기술의 실시권 허여 혹은 양도 시 지원세제 개선방안
- 국제간 기술거래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조** 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개별적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세의 개념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조세의 주된 기능은 통치단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충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울러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기 조절을 부수적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부수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조달 목적 이외에 경제적,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조세법에는 조세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과정 금을 의미한다”고 하여 조세의 비재정적 목적을 인정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비재정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제정책, 산업정책, 환경정책, 사회정책 등의 국가목표실현에

기여하도록 국민 개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려는 목적 하에 한시적인 조세특별조치를 통해 세제를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조세의 비재정적 목적이 각종 정책수단으로 활용된지 오래이지만 최근 토지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산업정책, 농어촌정책, 관광정책과 관련된 영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수행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세제는 일정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특성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물론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정책수단에는 세제 외에도 예산지원, 금융지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예산지원과 금융지원은 자금의 직접적인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세제를 통한 방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조세를 감면시켜 주거나 조세를 중과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조세감면과 조세중과에 관한 조치는 당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적용이 없는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조세법규에 비하면 일종의 조세특별조치라고 할 수 있다.

종래 조세특별조치를 포함한 정책조세는 과세의 공평을 회생해서 특정 소수기업이나 개인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경제적·사회적 목적이 조세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는 조세를 오로지 재정조달 수단이라는 고전적 목적으로만 인식한 결과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국가의 경제력이 고도로 성장하고 각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국가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또는 기업·이익단체·자본가층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압력에 의한 정치적 산물로서 다양한 정책세제가 창설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제도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같은 현실은 조세의 기능 및 목적에 대한 기

존의 관점과 가치판단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재산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제2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 등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에 관해 세법상 지원하여야 하는가? 경제학자들의 풀이에 의하면 한마디로 시장의 실패에서 그것을 구할 수 있다. 시장의 실패 원인은 여러가지이나, 시장실패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권리화하고, 권리화된 기술을 양도 혹은 실시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기술개발로부터 권리화된 기술을 양도 혹은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술개발로부터 생기는 모든 이익을 차지할 수 없으므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재산권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방안 중 조세지원방안을 취할 경우 다른 지원방안에 비해 유리한 점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지원방안은 시장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사경제부문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자치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조세지원방안은 다른 지원방안에 비해 행정적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조세지원방안은 비교적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셋째, 조세지원방안은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애매하고 상세한 요건을 정할 필요가 없다. 기술개발에 관해서만 본다면 조세지원은 주로 과거의 행태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조세지원방안은 산업계의 호의적 반응을



얻는 데 심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조세지원방안은 고도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특허기술개발단계에서의 지원체제의 개선방안

개발비에 관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여 그 실체에 따라 상각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

- 연구개발비에 관해 기업회계기준은 연구비는 당기 비용처리하고, 개발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이연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 범인세법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연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양자의 일치가 필요하다.

- 법인 또는 개인이 특허 등의 기술개발시 소요되는 비용(기술개발비)의 경비의 비용처리를 위해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중 기술개발의 범위가 부설연구소 경비 및 연구비원 이외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부서의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중소기업일지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를 적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특허사용료 또는 기술도입대가를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새로 추가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특허 활성화를 위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보고서 특허청이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있어서 밀어내기 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세액공제율은 캐나다 20~35%, 프랑스 25%, 오스트리아 2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비 등의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이 필요한 바, 중소기업은 22%, 대기업은 20%로 차등 인상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허출원료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특허의 기업화 단계에서의 지원체제의 개선방안

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율 인상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각각 차등을 두어 인상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설법인 및 조세 납부의무없는 법인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조세혜택이 주어지도록 허용되는 차기이월기간을 현행 4년에서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특허권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특허를 사용하여 얻는 이익에 국한하고 있으며, 이 또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허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에 대해 이월과 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조문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3. 특허 등 기술의 실시권 허여 혹은 양도 시 지원세제 개선방안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특허 등 기술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 개인이 특허권의 현물출자로 인한 회사설립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 4. 국제간 기술거래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무역을 하고 있는 외국과의 조세협정 체결시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를 반드시 채택할 필요가 있다.

-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소득세 혹은 법인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발행 2000 · 04

필 수 용 어

#### BM특허(Business Model Licence, 비즈니스모델 특허)

BM특허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 특허로,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사업방법이나 형태가 새로울 경우 특허로 그 권리를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방법이 추상적이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컴퓨터·네트워크·인터넷 등과 같은 기술을 매체로 구현방법이 설명돼야 한다.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물리적 기술·공정·장치·발명을 전제로 했던 기존 특허제도에선 생각지도 못했던 개념이다. BM특허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광고기법, 온라인 게임, 인터넷 조사방법 등 정보기술과 인터넷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미국 프라이스리인의 「역경매특허」와 아마존의 「원클릭특허」, 일본 스미토모은행의 「기업이 거래고객입금을 자동 조회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

국내에서도 전화를 이용한 대금결제, 조회, 예약과 팩스통지를 이용한 텔레뱅킹 방법 등이 이미 BM특허로 인정받았으며, BM특허 출원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BM특허의 특허대상인 비즈니스모델(아이디어) 자체가 다분히 추상적인데다 비즈니스의 확대, 발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론도 많다.

미국에서는 해당업체가 관련 소프트웨어기술이나 영업방법을 개발했을지라도 거의 모든 업체가 다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다면 이는 오히려 인터넷산업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BM특허의 출원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한편에서는 권리 인정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